

#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
##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522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4.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#### 가. 상정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사경과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	제6345호	백승아의원	2024. 12. 1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25. 2. 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</li> <li>○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소위(2026.3.12.) 상정</li> </ul>
	제7712호	정성국의원	2025.1.22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5. 2. 2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</li> <li>○ 제43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소위 (2026.2.26.) 상정</li> <li>○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소위(2026.3.12.) 상정, 제안설명, 축조심사</li> </ul>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사경과
	제11445호	김도읍의원	2025. 7. 1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비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(2025.8.18)</li> <li>○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소위(2026.3.12.) 상정</li> </ul>
	제12692호	강경숙의원	2025.9.4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전체회의(2025. 11. 2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</li> <li>○ 제43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소위(2026.2.26.) 상정, 제안설명, 축조심사</li> <li>○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소위(2026.3.12.) 상정</li> </ul>

나.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 3. 17.)는 이상 4건의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다.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교육위원회(2026. 3. 24.)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‘비대면 활동’을 추가하여 ‘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’으로 규정하고,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‘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’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(안 제19조).

나.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(안 제29조).

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
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활동 중인”을 “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반복적으로”를 “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”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 중 “지정”을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문인력 및 시설 등”을 “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할청은”을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”으로, “운영”을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·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.



제29조(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)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,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9조(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교육활동  
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  
거나-----  
-----  
-----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-----  
-----설치·운영-----  
-----  
-----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